

2015-제3차 울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 사 최재영

의 장 정용환

1. 회의일시: 2015. 10. 20.(화) 17시 ~ 18시20분

2. 장 소: 행정본관 3층 소회의실

3. 참석자(10명)

- 교수평의원: 김이두(교수협의회 회장), 손영식(교수협의회 부회장), 최윤락(교수협의회 부회장), 전성표(기획처장)
- 학생평의원: 이상민(총학생회장), 서병익(공과대학생회장)
- 직원평의원: 박수동(총무처장), 장준민(노동조합위원장)
- 외부인사평의원: 정용환(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규식(총동문회 상임이사)
- 간 사: 최재영(기획처 기획평가팀 대리)
- 배 석 자: 이홍표(예산팀장)

4. 불참자(1명): 정훈용(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5. 성원보고: 간사

- 재적 평의원 총 11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6. 회의내용

- 정용환 의장: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오늘 심의안건과 자문안건을 사무국에서 얘기해 달라
- 김이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중 죄송하나 한 말씀드리겠다. 금일 논의할 안건이 2개이다. 혹시 의장님께서는 다른 안건이 기타 부서에서 제시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
- 정용환 의장: 저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 김이두 의원: 다른 안건도 접수 되었다. 그 중 몇 건은 필터링이 되었던 것 같다. 또 의장님께 해당 건이 왜 접수가 되지 않았던 지에 대한 사유가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다.
- 정용환 의장: 사무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최재영 간사: 대학평의원회 개최 안내를 위해서 본교 전 부서에 안건 접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지금 제시된 안 건 이외에 인문대에서 1건, 자연대에서 1건, 기타(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규정 개정 건) 1건이 안건 상정 건으로 접수되었다. 해당 3건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에 해당되지 않기에 심의 및 자문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 김이두 의원: 해당 내용을 의장이 모르는데, 그것을 누가 필터링을 하였는가?
- 전성표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해당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운영을 하는 부서로 기획처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기타로 접수된 등심위 규정 개정 건은 안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는 건이 아니다. 해당 건은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안건으로 될 수 없다고 발의자에게 안내를 하였다.
- 김이두 의원: 제가 통보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의장님께서 안건 접수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는 사항을 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정용환 의장: 내가 안건 접수를 심의하는 사람은 아니다.
- 김이두 의원: 무슨 내용이 접수되었는지도 몰라도 되는가
- 정용환 의장: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가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 기능이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 김이두 의원: 그래요, 학칙에 보면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 정용환 의장: 아니다.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이다.
- 김이두 의원: 아니다. 예결산과 주요 3개 항목만 자문이다.
- 정용환 의장: 의결에 대한 사항은 없다.
- 손영식 의원: 원래 규정에 의하면 기획처에서 이것이 안건이다 아니냐를 결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안건이다 아니냐는 회의 석상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대학평의원회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 지금 회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 김이두 의원: 의장님은 지금 어떤 사항들이 접수되었는지는 모르지 않는가
- 정용환 의장: 그렇다
- 김이두 의원: 그것이 맞는가
- 정용환 의장: 나도 모르겠다. 지금 의장을 맡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번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소모전이 너무 심하다. 평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학교와의 대립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제가 처음 의장을 맡을 때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매번 충돌하고 소모전으로 시간 낭비하는 부분은 올바르게 않다고 본다.
- 김이두 의원: 저희가 소모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처에서 접수받은 안전을 왜 다 논의할 수 있는 안전으로 올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논의를 할지 말지를 적어도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교수대표 김성득 교수님께서 대학 평의회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고, 제9조 기획처가 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기획처가 회의를 도와주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안전으로 성립되어 올라온 것이면 의장님이 아실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명확히 안전으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의장님께 하나하나 보고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접수된 안전 중 등심위 규정 개정 건은 해당 규정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교무위원회 안전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면 규정개정이 되는 부분이다, 굳이 대학평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것이다. 안전이 아니기에 의장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 손영식 의원: 기획처가 회의의 운영을 도와주는 부서인데, 안전의 채택 여부도 운영에 들어가는 것인가, 제가 바라는 점은 안전인지 아닌지를 이 회의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 전성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 건과 관련하여 작년에 김성득 교수대표가 안전을 7일전에 접수 및 선정하여 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규정에 명시하였다. 그래서 기획처에서는 어떤 것이 안전인지를 판단하여 의원님들께 알려야 한다. 따라서 등심위 규정 개정 건은 안전으로 성립되지 않기에 안된다고 발의자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회의 안전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 손영식 의원: 그 건은 7일전에 의장에게 보내라는 내용이 아닌가
- 정용환 의장: 학생대표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
- 서병익 의원: 기획처장님께 질의하겠다. 안전 상정에 대한 부분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의원회 안전은 참석자 전원 찬성이면 상정이 되지 않는가, 이번 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 전성표 의원: 그 부분은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사전에 채택되지 않은 안건이 급하게 상정되는 것이다.
- 서병익 의원: 교무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들어가지 못한다. 등심위 규정 개정이 학생대표의 의견이 들어간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교무위원회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대상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다. 학생대표를 모시고 진행이 가능하기에 등심위 규정 개정이 건이 상정되면 학생대표를 모시고 진행가능하다.
- 서병익 의원: 등심위 규정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안건이 아닌가
- 전성표 의원: 학칙이 아닌 부분이기에 그렇다
- 김이두 의원: 등심위 규정 개정을 교무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인가
- 전성표 의원: 관련 내용을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교무위원회 안전 상정을 요청하면 기획처에서 검토하여 교무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손영식 의원: 한말씀드리겠다. 학칙개정은 평의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인가?
- 전성표 의원: 아니다.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학칙 이외의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손영식 의원: 그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 전성표 의원: 교무위원회 규정을 보면 학칙과 제규정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손영식 의원: 그 논리라고 하면 금일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학칙 개정안 심의 건은 잘못 올라온 것이 아닌가
- 전성표 의원: 아니다.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손영식 의원: 그러면 왜 등심위 규정 개정 건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학칙과 기타 위원회 규정은 다르다. 학칙 외의 규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칙 외의 규정은 교

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교무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라

- 손영식 의원: 이것은 학칙이라서 해당되고, 저건은 학칙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 전성표 의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해당 내용이 규정화 되어 있다
- 손영식 의원: 저는 위원회의 규정도 학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전성표 의원: 울산대학교 규정집을 가지고 오겠다
- 최윤락 의원: 지금 논의의 쟁점은 기획처에서 안건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 몇 분의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 전성표 의원: 그러면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기획처가 회의를 운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앞으로 평의원회를 기획처에서 운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련 제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다.
- 최윤락 의원: 회의 7일 전 안건 통보 전에, 어떤 건이 접수되었는지 최소한 의장에게 보고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아니다
- 최윤락 의원: 아니다, 모든 내용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맞다 아니다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성표 의원: 아까 쟁점이 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 손영식 의원: 대학평의원회가 상위 법에서 명시한 기구이므로 학칙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 최재영 간사: 규정 문구를 말씀드리겠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제2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칙만을 다룰 수 있다. 교무위원회에서는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김이두 의원: 그러면 학칙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평의원회까지 확인해달라
- 손영식 의원: 한마디 더 드리면,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상위 법에서 규정화된 내용이므로 등심위를 여기서 얘기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학칙 안에 위원회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모든 안건이 평의원회에서 논의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 정용환 의장: 5분간 휴회를 하겠다.

- 김이두 의원: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다. 교내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내라고 공문이 발송되었고, 접수된 안전들에 대한 것이다.
- 정용환 의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그 부분은 교수, 학생도 등심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규정상 다룰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기에 교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의장 명의로 안전을 접수 시키겠다.
- 김이두 의원: 대학평의원회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다.
- 서병익 의원: 교무위원회에 참여가능한가
- 전성표 의원: 가능하다
- 정용환 의장: 이것으로 이 사항을 마무리 짓겠다
- 전성표 의원: 한 말씀 더 드리면 본교에서는 처장회의, 학처장간담회를 거쳐서 교무위원회를 진행한다. 해당 안전을 발송하시면 처장회의부터 안전으로 다루고 매 회의마다 필요하시다면 배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동의 하시는가
- 정용환 의장: 좋다. 이것으로 이 건으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손영식 의원: 구체적으로 안전은 누가 만드는가
- 정용환 의장: 학생대표의견과 교수협의회의견 모두를 의장 명의로 올리겠다
- 김이두 의원: 한가지 더 안전이 접수되지 않은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정용환 의장: 접수된 모든 사항을 제가 검토할 수 없다.
- 김이두 의원: 접수된 목록을 모든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전성표 의원: 여기서 모든 안전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 회의 석상에서 채택되려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참석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김이두 의원: 회의 1주일 전 안전 전체 목록이 송부되면 그 모든 목록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 박수동 의원: 모든 접수 안전을 회의 석상에서 살펴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정용환 의장: 규정상 학칙만 심의할 수 있고 제규정 전부를 심의 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다.
- 손영식 의원: 목록을 보고 이 자리에서 안전을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자
- 장준민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등심위 규정 개정 건을 교무위원회에 상정

한다는 결론은 찬성한다, 또한 회의 안건은 운영을 맡은 기획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단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심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타 부서에서 오는 부분은 기획처에서 자체 판단해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

- 전성표 의원: 안건이 채택되어서 오는 경우, 즉흥적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 모든 안건을 회의에서 다루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 박수동 의원: 금일 논의해야할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내용을 논의하자
- 정용환 의장: 장준민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저도 찬성한다
- 전성표 의원: 그러면 1주일 전에 공지가 되는 안건은 논의를 하고, 기타 이 자리에서 발의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안건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 정용환 의장: 좋다, 금일 심의 내용을 논의하자
- 전성표 의원: 학칙 개정 건이고 상위법에서 해당 내용을 학칙에 명시 하라는 것이다. 또한 안전공학 연계전공이 있고, 학위수여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내용에 대한 심의 건이다
- 손영식 의원: 해당 건은 관련법에 따라 학칙을 바꾸는 것이다 등심위 규정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 전성표 의원: 등심위 얘기는 그만하자
- 손영식 의원: 관련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기획처장이 의장인가, 상위법에서 중요한 것은 학칙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사소한 것은 왜 명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안건에 반대한다
- 전성표 의원: 한마디 드리겠다. 상위법에 따라 학칙을 만들었고, 상위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손영식 의원: 상위법에 등심위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 전성표 의원: 관련 절차가 등심위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인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것인데 등심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인이사회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에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 현재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교 등심위 규정에 예산의 심의 의결이라는 문구를 넣지 못했지만 상위법은 사립학교법에서 예산을 심사 의결하라는 내용이 있기에 등심위에서 상위법에 따라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

- 손영식 의원: 헌법소원을 내면은 법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 정용환 의장: 잠깐만요, 두분의 토론시간이 아니다. 금일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만 발언해달라
- 서병익 의원: 안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안전공학이라는 분야가 공과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전공인가
- 전성표 의원: 여러 학과가 융합된 연계전공이다
- 서병익 의원: 알겠다
- 정용환 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 안건은 심의가 된 것으로 하겠다.
- 손영식 의원: 제가 반대했다는 내용을 남겨 달라
- 정용환 의장: 자 그러면 다음은 자문 안전에 대한 내용이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다 설명해 달라
- 이홍표 예산팀장: 예산팀장 이홍표이다. 제가 설명하겠다. 국고 보조금 증가, 대학 발전기금 용도별 재분류 등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이다. 기배정예산 2,610억여 원에서 약 55억여 원이 증가된 2,665억여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주요수입 증감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약 14억여 원, 기금인출 수입 약 18억여 원, 2014학년도 명시이월금 20억여 원이 증가하였다. 주요지출 증감 내용은 캠퍼스 교통환경 개선, 의대건물 임차료, UWIN시스템 개발 등 관리운영비 33억여 원,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14억여 원, 교외장학금 13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과대학 교원지위 불인정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25억 원이 감소하였다. 1회 추경때 보다 약 55억원이 늘어난 약 2665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 손영식 의원: 자료 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무엇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산학융합지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 비용이다
- 손영식 의원: 사유지 매입은 어떤 건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중앙도서관 뒤편 마실이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이다. 마실 소유자 분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매입을 계속 못하고 있었다
- 최윤락 의원: 학교가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이홍표 예산팀장: 대학발전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교비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 전성표 의원: 지난번에 하려다가 기타 사유로 계속 미뤄졌었다
- 이홍표 예산팀장: 미루어진 이유는 소유자 사이에 내분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김이두 의원: 자료 중 이월금이 등록금회계 108억, 비등록금회계가 112억인데, 이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보여진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 이홍표 예산팀장: 등록금 회계에서는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김이두 의원: 이월금이 이어지다보니까 명시이월금이 20억 증가하였는데 작년 회계에서 올해회계로 넘어온 명시이월금 총액이 얼마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142억이다
- 김이두 의원: 142억 중 건축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나
- 이홍표 예산팀장: 아니다. 이월금은 불용잔액이고, 계속 사업의 예산은 명시이월금으로 표기 된다. 산학융합지구에 투입되는 금액은 적립금이고 적립금은 이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김이두 의원 : 건축적립금으로 토지매입을 못한다
- 이홍표 예산팀장: 아니다 건축기금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 김이두 의원 : 다시 질의해보겠다. 학생들 등록금 회계로는 땅을 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이홍표 예산팀장: 등록금 회계에서는 토지매입을 못한다. 하지만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누어진다. 비등록금 회계안에는 기금이 있다. 기금 안에는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이 있다. 이 기금에서는 매입할 수 있다.
- 김이두 의원: 기금으로 토지매입을 했다는 것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그렇다
- 김이두 의원: 명시이월금은 142억인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넘어온 금액이 있는가, 몇 년간 쌓인 것인가, 작년 금액이 이월된 것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2년간 이월할 수 있다.
- 김이두 의원: 2년간 이월된 금액이 142억 이라는 말인데, 수치상 1년에 70억원씩 넘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 이홍표 예산팀장: 꼭 그렇지 않은 않다.
- 김이두 의원: 등록금회계에서 명시 이월을 할 수 있는 상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

- 이홍표 예산팀장: 전체 자금 수입의 2%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김이두 의원: 그런데 본교는 왜 이렇게 많은가
- 이홍표 예산팀장: 상한비율은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이월에 해당 되는 내용이다. 일반이월금 약 67억이 여기에 해당 되는 내용이다
- 김이두 의원: 본교 예산 규모로 보면 상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 아닌가
- 이홍표 예산팀장: 올해 실태조사에서 초과분 0.4%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 김이두 의원: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학교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작년에도 29억 원이 넘어왔고 1차 추경에서 또다시 증액되었고, 명시이월금도 계속 증액되는데, 산학융합지구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 즉 필요시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노조 임금협상에서 본부는 힘들다는 이유로 약 10억원 정도의 금액도 타결되지 않는데 왜 이월금이 대학평의회회할 때마다 증액될 수 있는가
- 이홍표 예산팀장: 명시이월금은 계속사업, 연구비 등 꼬리표가 달려있는 자금이다. 이 금액으로 임금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이월금인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 40억 정도 선반영 했으며, 나머지 27억여 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부분을 약 27억 빼고 갔었다.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한 내용이다.
- 김이두 의원: 명시이월금 142억 원이 토지매입비용에 상응하는 것 아닌가
- 이홍표 예산팀장: 토지매입비용은 자료 중 6/7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기금 인출이 있는데 이 금액이 산학융합지구에 투입된 금액이다. 비등록금 회계이다
- 김이두 의원: 이것이 건축적립금 아닌가
- 이홍표 예산팀장: 건축적립금이다
- 김이두 의원: 건축적립금으로는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다고 교육부에서 확인받았다
- 이홍표 예산팀장: 그것은 등록금회계에서는 매입할 수 없으나, 비등록금 회계에서는 매입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된 관련 법규를 제시하다)
- 김이두 의원: 법적으로 이상 없이 진행된 건인가
- 이홍표 예산팀장: 그렇다

- 김이두 의원: 우려하는 부분은 등록금을 받아서 자꾸 이월을 하는데 학교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전성표 의원: 이월되는 것이 학교에서 다른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구입예정인 물품을 구입 못하거나 사업 미종료 등의 이유로 이월금이 많다. 산단 회계도 살펴보시라. 같은 이유로 이월금이 많을 것이다. 이월금을 일부러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다. 그 중 상당 부분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한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27억 책정 하지 못하였는데, 거기서 반영하고 남은 부분을 인건비에 반영하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감사를 상시 받고 있기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
- 정용환 의장: 학생대표들도 발언하겠는가
- 이상민 의원: 등심위 개정(안) 발의 시 의견 개진을 하겠다.
- 정용환 의장: 장준민 의원 발언하겠는가
- 장준민 의원: 수입 부분에서 산학융합지구 설계비가 10억으로 나오는데 지출에서는 설계비가 7.7억원으로 나온다,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
- 이홍표 예산팀장: 그 부분은 설계비가 10억은 들어갔는데, 기계와 화공에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었다. 거기서 2억 3천이 남았고 상계가 되어 7억 7천이 나온다
- 장준민 의원: 2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현재 임금협상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중 교원 급여 예산이 8000만원 줄었고, 직업 급여예산도 6700만원 줄었다.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계를 보면 직원 채용이 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 1인당 업무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퇴직자만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로 보여진다. 직원 채용의 부분에서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 이홍표 예산팀장: 교원 급여 예산 삭감은 링크사업단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 임금의 70%를 보전 받도록 되어있다.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라 감액된 것이다.
- 전성표 의원: 직원 부분은 다시 내용을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다. 일부러 직원을

더 채용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 박수동 의원: 직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및 업무 분장을 하면서 줄어든 부분이다. 또 과거 직원 수에 포함되었던 기능직 중 일부가 현재는 용역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상세 확인 후 답변을 드릴 수 있다.
- 정용환 의장: 자 이것으로 자문안전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라
- 김이두 의원: 아까 등심위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처장님께서 말씀 중 헌법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헌법재판관에게 질의하였는데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 전 총장님 면담 시 사립학교법에 맞게 등심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작성 시 학생대표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 전성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해당 내용 헌법소원 건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학생대표나 동문대표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린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2013년 10월 16일에 해당 건이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는 2013헌마692로 명시되어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면 자칫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거짓말하는 줄 안다.
- 김이두 의원: 사건번호를 다시 알려 달라
- 전성표 의원: 회의 종료 후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시라, 잘 알지도 못하는 건을 책임감없이 말씀 하시면 안된다
- 김이두 의원: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가
- 전성표 의원 : 접수번호가 있다.
- 김이두 의원: 접수만 되었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닌가
- 이홍표 예산팀장: 현재 심리중으로 조회되고 있다.
- 김이두 의원: 다시 확인해보겠다.
- 정용환 의장: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 장준민 의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아까 결정된 사항은 실행되었으면 한다
- 이상민 의원: 아까 요청 드린 사항만 확인해주시면 된다
- 전성표 의원: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 첫째 등심위 규정 관련 건은 교수대표, 학생대표에서 (안)을 주시면 의장님 명의로 교무위원회에 상정하고,

들께, 회의 안건 상정은 접수된 안건을 기획처에서 채택해서 회의 1주일 전에 논의 안건을 공지하고, 채택되지 않은 건 또는 확실하지 않은 건은 회의자리에 들고와서 규정을 따르던지 여러 의원들 중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

- 정용환 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안되었던 사항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